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I. 개요

1. 세입예산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대비 22.7% 증액된 1천 4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세외수입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45	60	15	15	33.3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1,157	13,686	2,529	2,529	22.7	22.7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세외수입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45	60	15	15	33.3	33.3
이자수입	45	45	60	15	15	33.3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1,157	13,686	2,529	2,529	22.7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3,880	6,857	2,977	2,977	76.7	76.7
기타수입	1,193	1,193	1,445	252	252	21.1	21.1
지난년도수입	6,084	6,084	5,384	△700	△700	△11.5	△11.5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23억 3천 6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8억 8천 7백만원 대비 19.1% 감액된 수준이며, 2022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8억 8천 7백만원 대비 19.1%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행정관리	소 계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행정운영경비	566,660	566,660	571,126	4,466	4,466	0.8	0.8
	사 업 비	2,320,449	2,320,449	1,765,311	△555,138	△555,138	△23.9	△23.9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감사담당관	893,764	893,764	943,360	49,596	49,596	5.5	5.5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91,365	391,365	393,089	1,724	1,724	0.4	0.4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391,365	391,365	393,089	1,724	1,724	0.4	0.4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13,000	13,000	13,000	0	0	0	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49,694	349,694	351,325	1,631	1,631	0.5	0.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671	28,671	28,764	93	93	0.3	0.3
시정 청렴도 향상	171,300	171,300	198,300	27,000	27,000	15.8	15.8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시정 청렴도 향상	171,300	171,300	198,300	27,000	27,000	15.8	15.8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9,900	109,900	130,900	21,000	21,000	19.1	19.1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1,400	61,400	67,400	6,000	6,000	9.8	9.8
행정운영경비	331,099	331,099	351,971	20,872	20,872	6.3	6.3
기본경비	331,099	331,099	351,971	20,872	20,872	6.3	6.3
기본경비	331,099	331,099	351,971	20,872	20,872	6.3	6.3
공공감사담당관	124,566	124,566	111,166	△13,400	△13,400	△10.8	△10.8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86,320	86,320	72,920	△13,400	△13,400	△15.5	△15.5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86,320	86,320	72,920	△13,400	△13,400	△15.5	△15.5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86,320	86,320	72,920	△13,400	△13,400	△15.5	△15.5
행정운영경비	38,246	38,246	38,246	0	0	0	0
기본경비	38,246	38,246	38,246	0	0	0	0
기본경비	38,246	38,246	38,246	0	0	0	0
안전감사담당관	184,283	184,283	170,483	△13,800	△13,800	△7.5	△7.5
안전도시 서울 구현	133,450	133,450	118,450	△15,000	△15,000	△11.2	△11.2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133,450	133,450	118,450	△15,000	△15,000	△11.2	△11.2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39,940	0	0	0	0
안전감사 활동 강화	93,510	93,510	78,510	△15,000	△15,000	△16	△16
행정운영경비	50,833	50,833	52,033	1,200	1,200	2.4	2.4
기본경비	50,833	50,833	52,033	1,200	1,200	2.4	2.4
기본경비	50,833	50,833	52,033	1,200	1,200	2.4	2.4
조사담당관	506,182	506,182	486,578	△19,604	△19,604	△3.9	△3.9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416,392	416,392	394,842	△21,550	△21,550	△5.2	△5.2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314,640	314,640	314,790	150	150	0.1	0.1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5,000	0	0	0	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3,240	63,240	65,440	2,200	2,200	3.5	3.5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6,400	246,400	244,350	△2,050	△2,050	△0.8	△0.8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44,100	44,100	42,400	△1,700	△1,700	△3.9	△3.9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4,100	44,100	42,400	△1,700	△1,700	△3.9	△3.9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57,652	57,652	37,652	△20,000	△20,000	△34.7	△34.7
기강감찰 운영	57,652	57,652	37,652	△20,000	△20,000	△34.7	△34.7
행정운영경비	89,790	89,790	91,736	1,946	1,946	2.2	2.2
기본경비	89,790	89,790	91,736	1,946	1,946	2.2	2.2
기본경비	89,790	89,790	91,736	1,946	1,946	2.2	2.2
인권담당관	1,178,314	1,178,314	624,850	△553,464	△553,464	△47	△47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121,622	1,121,622	587,710	△533,912	△533,912	△47.6	△47.6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121,622	1,121,622	587,710	△533,912	△533,912	△47.6	△47.6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95,616	95,616	0	△95,616	△95,616	△100	△1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55,010	55,010	62,540	7,530	7,530	13.7	13.7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9,880	39,880	36,820	△3,060	△3,060	△7.7	△7.7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22,520	322,520	71,500	△251,020	△251,020	△77.8	△77.8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0	60,000	36,050	△23,950	△23,950	△39.9	△39.9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5,600	155,600	154,800	△800	△800	△0.5	△0.5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3,420	53,420	42,000	△11,420	△11,420	△21.4	△21.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7,000	127,000	0	0	0	0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134,320	134,320	0	△134,320	△134,320	△100	△100
인권지킴이단 운영	14,256	14,256	5,000	△9,256	△9,256	△64.9	△64.9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4,000	64,000	52,000	△12,000	△12,000	△18.8	△18.8
행정운영경비	56,692	56,692	37,140	△19,552	△19,552	△34.5	△34.5
기본경비	56,692	56,692	37,140	△19,552	△19,552	△34.5	△34.5
기본경비	56,692	56,692	37,140	△19,552	△19,552	△34.5	△34.5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예산(1천1백만원) 대비 22.7%(250만원) 증액된 1천 4백만원으로, 이는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인권담당관(당초 정무부시장 직속)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도 증가하였음.
- 감사위원회 세입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교부로 발생한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세외수입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45	60	15	15	33.3	33.3
이자수입	45	45	60	15	15	33.3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1,157	13,686	2,529	2,529	22.7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3,880	6,857	2,977	2,977	76.7	76.7
기타수입	1,193	1,193	1,445	252	252	21.1	21.1
지난년도수입	6,084	6,084	5,384	△700	△700	△11.5	△11.5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
계	11,202	13,746	2,544	22.7	
세 외 수 입	11,202	13,746	2,544	22.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45	60	15	33.3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 대비 증감	증감률 (%)	산출기초
이자수입	45	60	15	33.3	<인권담당관> -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60천원
기타이자수입	45	60	15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3,686	2,529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6,857	2,977	76.7	<인권담당관>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6,857천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880	6,857	2,977	76.7	
기타수입	1,193	1,445	252	21.1	<감사담당관> -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936천원 - 각종 수당 등 환수(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509천원
그외수입	1,193	1,445	252	21.1	
지난년도수입	6,084	5,384	△700	△11.5	<안전감사담당관> - 소송비용 환수 : 1,574천원 <조사담당관> - 소송비용 환수 : 3,811천원
지난년도수입	6,084	5,384	△700	△11.5	

가.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권담당관에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인 '기타이자수입'으로 전년(4만5천원) 대비 33.3% 증액한 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3년 추계액 : 60 천원
- 산출내역 : ('22년도 민간경상보조금 20,000천원) * 0.03% = 60천원

회계연도	2020	2021	2022	2023
전년도보조금(A)	230,000천원	230,000천원	300,000천원	200,000천원
이자수입(B)	53천원	70천원	64천원	60천원
비율(B/A)	0.02%	0.03%	0.02%	0.03%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시기 및 금액과 집행시기에 따라 이자액이 달리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간(2020-2022) 보조금 대비 이자 반환률 추계를 2022년 민간경상보조금액에 적용하여 2023년 징수 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기타이자수입' 〉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36	45	45	70	45	64	64	60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감사위원회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680만원)', '기타수입(140만원)', '지난년도수입(540만원)' 등으로 전년(1천1백만원) 대비 22.7%(2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1,157	13,686	2,529	2,529	22.7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3,880	6,857	2,977	2,977	76.7	76.7
기타수입	1,193	1,193	1,445	252	252	21.1	21.1
지난년도수입	6,084	6,084	5,384	△700	△700	△11.5	△11.5

-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인권담당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년(380만원) 대비 76.7%(300만원) 증액된 68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세입추계 ----- 6,857천원
 ◦ 최근 5년간('18.~'22.)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액 평균

□ 2022년 세입추계 ----- 3,880천원
 ◦ 최근 3년간('18.~'20.) 징수액 평균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감안하여 2021년도 징수액 제외)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징 수 액	2,086	5,159	10,986	11,658

-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 추계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며, 2022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결산전망이 1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2023년 세입예산은 680만원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	-	0	10,986	3,880	11,658	11,658	6,857

-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93만원, ‘각종 수당 등 환수’ 51만원 등 전년(120만원) 대비 21.1% 증액한 1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어,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기본개념 : 업무과정에서 비리·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자동 정보 ⇒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예방
-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방법 : 행정자치부,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 위·수탁
- ※ 위·수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제3항제2호

〈 2023년도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추계내역 〉

사 항 별	추 계 내 역
세외수입	1.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금 : 93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 2023년 세입추계 ----- 936천원
	○ 최근 3년간('20.1.~'22.6.) 징수액 평균
기타수입	□ 2022년 세입추계 ----- 589천원
	○ 최근 3년간('19.1.~'21.6.) 징수액 평균

〈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764	481	499	651	589	1,677	1,677	936

- ‘그외수입’ 중 ‘각종 수당 등 환수’는 수당 및 급여의 지급오류를 환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전년(60만원) 대비 15% 감액한 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각종 수당 등 환수’ 〉

(단위 : 천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징수액	1,182	646	281	464	773

- 이는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과지급 또는 부당한 지급 등을 환수한 결과로 ‘각종 수당 등 환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의 반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난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지난년도 수입’은 전액 ‘소송비용 환수’임.
-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확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일부 징수(70만원)함에 따라 전년 (608만원) 대비 11.5% 감액한 5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난년도 수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1,202	11,202	13,746	2,544	2,544	22.7	22.7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1,157	13,686	2,529	2,529	22.7	22.7
지난년도수입	6,084	6,084	5,384	△700	△700	△11.5	△11.5

- 2023년에 편성된 환수대상 소송은 2013년에 확정된 건으로, 올해 일부 징수(70만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음.

※ 소송비용 환수 내역

- 행정소송(2013두 *****) : 감봉 1월 처분취소 소송, 승소판결 451만원(중 70만원 징수)
- 민사소송(2013카학 ****) : 감봉 1월 처분취소 소송, 승소판결 157만원

- 감사위원회는 징계처분 당사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소송결과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하나, 세입전망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분석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미납 세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예산 검토

-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23억3천6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17억 6천 5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23억2천만원) 대비 23.9%(5억5천5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지난 8월 19일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인권담당관의 2023년 세출예산은 6억 2천 5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11억7천8백만원) 대비 47.6%(5억 5천3백만원) 감액되었음.

〈 2023년도 감사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행정관리	소 계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행정운영경비	566,660	566,660	571,126	4,466	4,466	0.8	0.8
	사업비	2,320,449	2,320,449	1,765,311	△555,138	△555,138	△23.9	△23.9

〈 2023년도 감사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550,672	△19.1	△19.1
감사담당관	893,764	893,764	943,360	49,596	49,596	5.5	5.5
공공감사담당관	124,566	124,566	111,166	△13,400	△13,400	△10.8	△10.8
안전감사담당관	184,283	184,283	170,483	△13,800	△13,800	△7.5	△7.5
조사담당관	506,182	506,182	486,578	△19,604	△19,604	△3.9	△3.9
인권담당관	1,178,314	1,178,314	624,850	△553,464	△553,464	△47	△47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감사위원회 2023년 소관예산 중 신규사업과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고, 2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과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는 전액 감액하였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7천1백만원, 77.8%감액)”, “인권지킴이단 운영(5백만원, 64.9%감액)”, “인권정책 홍보 강화(3천6백만원, 39.9%감액)”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주요감액 사업 현황(20%) : 7개 사업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기강감찰 운영	57,652	37,652	△20,000	△34.7	22년 최종 예산 심사에서 증액 편성된 분을 절감하여 예년 요구액으로 조정
2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95,616	0	△95,616	△100	행정국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비에 통합 편성되면서 사업폐지
3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22,520	71,500	△251,020	△77.8	온라인교육 활성화에 따른 기존 용역 수행 교육 운영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 강사 양성 주기를 2~3년으로 조정
4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0	36,050	△23,950	△39.9	인권백서 제작 사업 종료
5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53,420	42,000	△11,420	△21.4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영상 제작비 예산절감
6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134,320	0	△134,320	△100	행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권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주기를 2~3년으로 조정되면서 '23년도 미 개최 예정('22. 12월 개최 예정)
7	인권지킴이단 운영	14,256	5,000	△9,256	△64.9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 내용 변경

나. 부적정 편성 포상금 검토 필요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포상금(303-01)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¹⁾
- 감사위원회의 포상금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7개 사업에서 8개의 포상금으로 2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중에서 ‘공직기강 추진 실적 평가 시상(6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700만원)’, ‘청렴활동 포상(240만원)’,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1,290만원)’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포상이 아니라 계획 및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 예산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
- 1)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당해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포상금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목으로 변경하거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포상금 편성 상세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과목	사업내역	예산액	법령·조례 등 근거
지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포상금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6,000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금	12,000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7,000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하정청백리 포상	9,000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8조
		청렴활동 포상	2,400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포상금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12,900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안전감사 활동 강화	포상금	공무원 안전순찰 평가 포상	10,00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 제56조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기타 보상금	공익제보 보상·포상금	220,000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다.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동 사업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체감사 실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를 통한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년(3억4천9백만원) 대비 0.5% 증액한 3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49,694	349,694	351,325	1,631	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1,834	31,834	38,465	6,631	21
사무관리비	238,180	238,180	233,180	△5,000	△2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4,000	24,000	24,000	0	0
특정업무경비	43,680	43,680	43,680	0	0
포상금	12,000	12,000	12,000	0	0

-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활동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단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었는바, 감사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30면.

□ 공익감사단(감사담당관)

○ 인원 : 164명

임 기	'21. 5. 1. ~ '23. 4. 30. (2년)	'20. 11. 1. ~ '23. 4. 30. (2년 6개월)
인 원	125명	39명

※ 공익감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나, '20. 11. 1. 추가 총원에 한하여 전체 공익감사단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2년 6개월로 정함

○ 분야(3개 대분야, 19개 세부 분야)

법률회계노무계약 분야(6개 세부분야)							기술안전 분야(6개 세부분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계약	소계	토목	건축	내진	방재	설비	IT	소계
17	22	4	1	22	5	71	11	7	1	9	2	5	35
시정 분야(7개 세부분야)													합계
경제·일자리	교육	교통	문화·관광 체육	복지·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보건	소계						
4	3	5	7	32	3	4	58						164

〈 최근 3년간 감사참여 3회 미만 전문가 현황 〉

○ 2020.11.1., 2021.5.1. 위촉자 중 3회 미만 참여자 : 135명

구분	참가 실적(감·조사, 지도·점검, 자문 실적 포함)						
	합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인원	164	95	25	15	6	6	17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38면 재인용.

〈 최근 3년간 공익감사단 활동 내역 〉

구분	참여한 감사 수		누적 참여자 수	
	감사 수	비율	누적 참여 인원	비율
소 계	111	100%	250	100%
감 사	19	17.1%	35	14%
자 문	7	6.3%	22	8.8%
점 검	84	75.7%	192	76.8%
감사 및 자문	1	0.9%	1	0.4%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31-437면 재구성.

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동 사업은 업무과정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예방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2,860만원) 대비 0.3% 증액된 2천 8백 7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8,671	28,671	28,764	93	0.3
포상금	7,000	7,000	7,000	0	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671	21,671	21,764	93	0.4

- 본 사업의 증액은 청백-e시스템의 운영비로, 본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각 시·도로 통보하고 있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17개 광역 시·도가 설립 주체가 되고, 2008년 개원해서 정보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임.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기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 법 제72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 확산·보급
 6.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포상금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7,000천원 - 최우수 2,000,000원*1개 기관 = 2,000천원 - 우수 1,500,000원*2개 기관 = 3,000천원 - 장려 1,000,000원*2개 기관 = 2,000천원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7,000천원 - 최우수 2,000,000원*1개 기관 = 2,000천원 - 우수 1,500,000원*2개 기관 = 3,000천원 - 장려 1,000,000원*2개 기관 = 2,000천원
	증감사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청백-e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21,671,000원 = 21,671천원	○ 청백-e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21,764,000원 = 21,764천원
	증감사유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예산기초 자료 산출하여 우리시로 통보 - 산출근거: 「2022년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편성 자료안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정보부-1619, 2021.8.27.). ※2022.8월 중순 경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예산산출내역 통보예정임에 따라, 산출근거 및 예산산출액 변동가능 - 증감사유: SW기술자평균임금상승, 응용SW 기능 추가·변경·삭제로 인한 기능점수 증가 등		

- 다만,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를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점검도 없는바, 적절한 사업 추진 및 대행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동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홍보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년(1억1천만원) 대비 19.1%(2천1백만원) 증액한 1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09,900	109,900	130,900	21,000	19
사무관리비	79,000	79,000	90,000	11,000	14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20,000	10,000	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0	9,500	9,500	0	0
포상금	11,400	11,400	11,400	0	0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높은 국제 청렴도 지수 국가 및 도시의 청렴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감사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당초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 5백만원(42.9%) 감액한 후 2천만원을 전액 불용하였고, 2021년에는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하였으나, 2022년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은 전액 불용예정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외업무여비(1천만원)’를 전액 불용시킬 예정인바,
-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²⁾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0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높은 국제 청렴도 지수 국가 및 도시의 청렴제도 벤치마킹	20,000 (20년 제2회 추경 15,000천원 감액)	0	20,000	100%
2021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높은 국제 청렴도 지수 국가 및 도시의 청렴제도 벤치마킹	2,0000 (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	-	-	-
2022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높은 국제 청렴도 지수 국가 및 도시의 청렴제도 벤치마킹	10,000	0	10,000	100%

바. 안전감사 활동 강화

- 동 사업은 안전관련 시책의 집행력 제고, 예방중심 안전 감사 강화, 안전 사고 대응능력 제고, 공공기관·시민과의 안전 감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9천3백만원) 대비 16% 감액된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2)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93,510	93,510	78,510	△15,000	△16
사무관리비	39,050	39,050	24,050	△15,000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500	13,500	13,500	0	0
특정업무경비	30,960	30,960	30,960	0	0
포상금	10,000	10,000	10,000	0	0

- 공무원 안전순찰은 상시(출·퇴근, 일상 등) 안전순찰 실시·안전 위해요인을 신고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자치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재정지원)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46면.

- 공무원 안전순찰 사업개요 및 추진근거

- 사업목적 : 상시(출·퇴근, 일상 등) 안전순찰을 실시·안전 위해요인을 신고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안전도시 서울 구현

- 사업개시 : '19. 8월 공무원 전용 온라인 신고(앱) 구축 후 개시

- 신고대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한 모든 시설(도로 시설 등)

- 신고방법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활용

※ 처리절차: 신고 → 처리부서 지정 → 정비 → 정비결과 입력(앱)

- 순찰자(신고): 시 및 자치구 전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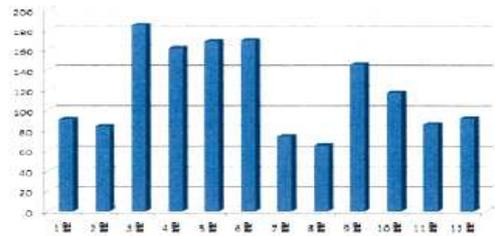
- 추진근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56조(재정지원)

-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 공무원 안전순찰 신고현황을 보면, 총 1,437건의 신고·처리가 있었으나, 신고가 특정부서에 편중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신고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는바,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안전순찰 신고의 특정부서 편중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 2022년 공무원 안전순찰 활성화 운영계획, 2022.3, 2면 재인용.

□ 운영(신고)현황 분석

- '22.3.현재 '공무원안전순찰 신고 앱' 등록 공무원 총 844명임
- '21년 총 1,437건 신고·처리. '20년(총 1,106건) 대비 331건 증가(↑23%)
 - (신고유형) 도로시설물 39.1%, 가로 지장물 11.7%, 교통 8.4%, 공원녹지 5.7%, 주택 1.4%, 기타 분야 35.1% → 도로 분야 가장 많은 신고 접수
 - (신고시기) 3월 185건이 가장 많고, 8월 65건으로 가장 낮음.
 - (신고부서) 성동구 감사담당관 288건, 강동수도사업소 114건으로 신고 참여부서 특정부서에 편중



⇒ 위 2개 기관의 신고율이 전체 대비 약 28% 차지. 모든 기관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요구됨

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동 사업은 분야별 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정책 등의 심의·자문으로 인권친화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5천5백만원) 대비 13.7% 증액된 6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5,010	55,010	62,540	7,530	14
사무관리비	40,250	40,250	30,500	△9,750	△24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2,600	12,600	12,600	0	0
특정업무경비	0	0	19,440	19,440	100
행사실비지원금	2,160	2,160	0	△2,160	△100

- 인권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5조(구성)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 ⑦ (생략)

- 제3기 인권위원회 임기('19.3.20. ~ '22.3.19.)가 지난 3월에 만료되었음에도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이 11월에 1차로 10명의 위원만 구성(외부 8명, 시의원 1명, 임기 미만료 1명(여))되었고, 아직 4명의 외부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아직까지 제4기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바,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제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10.

구성안 (1차)

- 임 기 : '22.11. 1. ~ '25.10.31. (3년)
- 위 원 수 : 10명 (남 9, 여 1)

계	외 부	시의원	3기 위원 임기 미만료	당연직
10명	8명(남)	1명(남)	1명(여)	1명 (인권부서 4급 이상 공무원)

- 인권담당관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을 통해 인권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인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동 사업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3억2천2백만원) 대비 77.8%(2억 5천1백만원) 감액된 7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22,520	322,520	71,500	△251,020	△78
사무관리비	315,320	315,320	64,300	△251,020	△8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7,200	7,200	7,200	0	0

〈 세부 산출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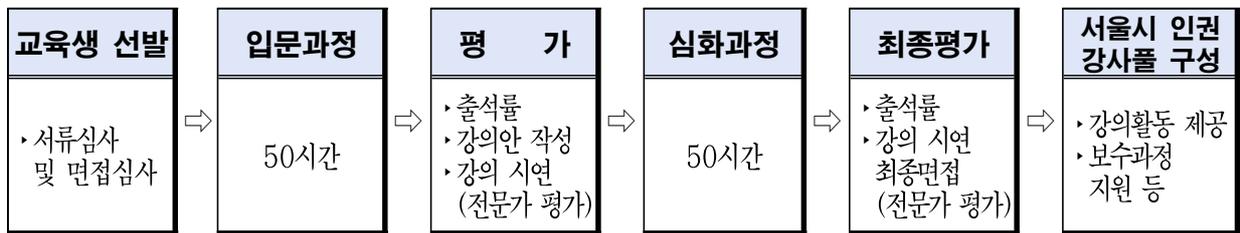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165,020천원	○ 서울인권아카데미 = 12,400천원
	- 관리자(4급이상), 시설장 교육 2,500천원 = 2,500천원	- 관리자 교육 1,500,000*1회 = 1,500천원
	- 본청 교육 10,800천원 = 10,800천원	- 직원 교육, 시설장교육 1,250,000*2회 = 2,500천원
	- 사업소 교육 16,000천원 = 16,000천원	- 찾아가는 인권교육 360,000*10회 = 3,600천원
	- 투자출연기관 교육 7,500천원 = 7,500천원	- 전문가 평가단 운영 = 2,300천원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43,000천원 = 43,000천원	- 교육 운영비 = 2,500천원
	- 온라인 강좌 제작비 50,000천원 = 50,000천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6,125,000월*8개월 = 49,000천원
	- 교육운영비(대관비, 홍보비, 인쇄비, 문구류 등) 35,220천원 = 35,220천원	○ 선정위원회 운영 200,000*7명 = 1,400천원
	○ 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150,000*5명*2회 = 1,500천원
	- 기본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심화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보수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인권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인권교육 안정적 운영
- 운영기간 : '22. 5. ~ 12월
- 운영내용 : 제8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 모집인원 : 40명
 - 지원자격 : 인권 관련 활동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서울 시민
- 운영방식 : 인권·교육 관련 강사양성 업체 용역사업
- 업체선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그동안 인권강사가 충분히 양성되어 인권강사 수급에 문제 없으며 또한 모집 지원자도 지속 감소하고 있어 3~4년 주기로 강사양성 계획임

□ 추진절차



□ 추진실적

구 분	운영기간	모 집	입문과정수로	심화과정수로	최종선발
계			273	244	243
제8기	'22년	39명 (48명 지원)	36	33	33
제7기	'21년	37명 (50명 지원)	35	34	34
제6기	'20년	40명 (93명 지원)	38	35	35
제5기	'18년	40명 (123명 지원)	37	34	34
제4기	'17년	41명 (94명 지원)	41	36	36
제3기	'16년 ~ '17년	35명 (140명 지원)	35	35	35
제2기	'15년	30명 (102명 지원)	26	26	25
제1기	'13년 ~ '14년	28명	25	11	11

※ 감사위원회 별도제출자료, 2022.11.11. 참조.

○ 다음으로, 인권교육은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따른 기존 용역수행 교육 운영방식을 인권담당관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음.

- 다만,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본청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율은 37%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인권교육 이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6-197면.

○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현황

- 2022년(9.30.기준):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제한적 운영 및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교육대상	교육 방법	교육횟수
본청	• 집합 및 온라인교육 병행 -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12개 강좌)	4회
사업소, 투출기관		23회
민간위탁 및 복지시설장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병행 - 집합교육: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주제특강 진행 - 온라인 교육(서울시평생학습포털): 6개 강좌	2회

○ 연도별 인권교육 이수율(출석현황) 및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2022년(9.30.기준) : 42,925명 이수(83%), 만족도 조사 진행 중(~'22.12월)

구	분	인원		이수율
		대상	이수	
합	계	51,945	42,925	83%
4급 이상 간부 직		672	425	63%
본청		5,916	2,176	37%
사업소		15,055	13,362	89%
투자·출연기관		29,905	26,894	90%
위탁·복지시설장		397	68	17%

- 2021년 : 47,164명 이수(92%), 교육 만족도 85점

구	분	인 원		이수율
		대 상	이 수	
합	계	51,141	47,164	92%
4 급 이 상 간 부 직		694	537	77%
본	청	5,032	4,024	80%
사	업 소	15,809	13,861	88%
투 자 · 출 연 기 관		29,197	28,457	97%
위 탁 · 복 지 시 설 장		409	285	70%

- 2020년 : 44,055명 이수(87%), 교육 만족도 82점

구	분	인 원		이수율
		대 상	이 수	
합	계	50,507	44,055	87%
4 급 이 상 간 부 직		657	545	83%
본	청	5,176	3,580	70%
사	업 소	15,159	10,980	72%
투 자 · 출 연 기 관		29,117	28,683	99%
위 탁 · 복 지 시 설 장		398	267	67%

자.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동 사업은 다양한 인권정책 발목을 위한 인권현안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 전년(1억5천6백만원) 대비 0.5% 감액된 1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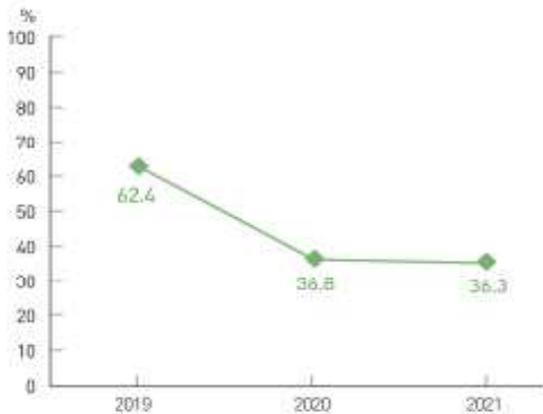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55,600	155,600	154,800	△800	△1
사무관리비	55,600	55,600	154,800	99,200	178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0	△100,000	△100

〈 세부 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현안 실태조사 9,600,000원*5개월 = 48,000천원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600,000원*5개월*3건 = 144,0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900,000원*4회 = 3,6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10,800천원
	○ 인권정책회의 개최 4,000,000원*1회 = 4,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3건 = 9,6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3건 = 1,200천원
증감사유		
○인권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인권실태조사(1건→3건) 확대에 따른 증액 103,200천원		
○인권정책회의 개최를 인권위원회 운영과 통합으로 인한 감액 △4,000천원		
연구용역비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12,500,000원*8개월 = 100,000천원	
	증감사유	
	제3차(2023~2027)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완료 △100,000천원	

- 동 사업은 제3차(2023~2027)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1억원)’는 감액하였고,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은 인권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해 기존 1건에서 3건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하였음(4천8백만원 → 1억4천4백만원).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일상에 존재하던 인권 문제를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재난 상황에서 개인,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해 질 수 있는지 드러나게 되었는바,
 - 국가인권실태조사(2021.1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6.3%로 1년 전에 비해 0.5% 감소하여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감소하였고,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별이 심각하다(매우+다소)’가 47.4%로 2020년 36.7%보다 증가하였음.

그래프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2019-2021)



통계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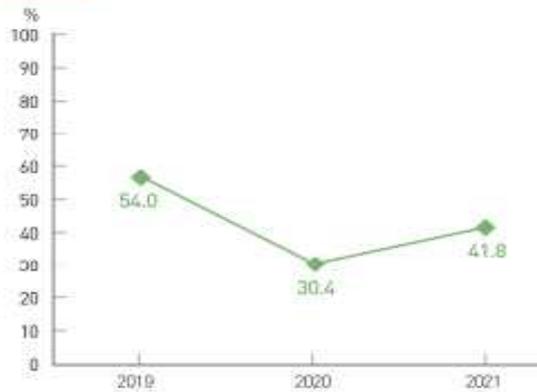
(%)			
구분(년)	2019	2020	2021
비율	62.4	36.8	36.3

주: 1)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어떤지라는 질문에 '조금 좋아지고 있다'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2)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그래프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9-2021)



통계표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2019-2021)

(%)			
구분(년)	2019	2020	2021
비율	54.0	30.4	41.8

주: 1)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다소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임.

2)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

※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2022.6., 5-6면 재인용.

- 따라서, 서울시민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 현안 실태조사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적절한 인권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연 1회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 예산안에서 정책회의 개최를 인권위원회 운영과 통합으로 전액 감액(4백만원)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 다만, 인권정책회의 연 1회 개최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270, 허훈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바, 의결 및 시행 되지 않은 조례를 근거로 정책회의의 연 1회 개최 의무화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바, 감사위원회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차.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동 사업은 인권관련 주요 역사적 장소에 대한 공간조성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을 위한 것으로 전년(5천3백만원) 대비 21.4% 감액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3,420	53,420	42,000	△11,420	△21
사무관리비	51,920	51,920	40,500	△11,420	△22
공공운영비	1,500	1,500	1,500	0	0

- 이는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비 중 기제작 영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제작비 감액(1천1백만원)에 따른 것임.
- 인권현장 바닥동판(표지석)의 설치 목적은 잊혀 가는 서울의 근현대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하여 인권 현장을 기억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접근하기 쉬운 인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된 바닥동판 설치 장소는 2019년 6월 기준(59개)으로 소개되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³⁾ 소개된 주소에 따라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장소를 찾아갔으나 실제로 바닥동판을 찾기 어려움에 따라⁴⁾ 시인성과 정보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바, 인권현장 바닥동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설치하거나 입간판 등으로 설치와 인권 현장에 대한 간단한 문구가 아닌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QR코드 연결로 정보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서울시 홈페이지-행정-참여혁신-인권-인권서울 기억(<https://news.seoul.go.kr/gov/archives/100236>, 최종방문 2022.11.9.).

4) 인권현장 바닥동판(표지석) 설치 주소 방문결과

구분	명칭	주소	방문결과
제도	대법원 터	종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한참 찾아다녔음. 밑에서 올라오는 길 계단 밑에 있었음.
제도	한성권번 터	종구 무교로 24(프리미어 플레이스 건물 앞 보도)	한참 찾았으나 결국 못 찾았음.
항쟁	덕수궁 대한문 앞	덕수궁 대한문 앞 보도	공사중으로 보이지 않음.
항쟁	청계천 광장	청계광장 조형물 앞 보도	광장 중앙바닥에 표지석.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음.
항쟁	장애인 운동가의 인권 투쟁 현장	종구 무교로6 금세기 빌딩 앞	시청 본청 길 건너 건물 - 건물 출입구 계단 밑에 위치. 비오거나 할 때 잘못 밟으면 미끄러질 위험

〈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실물 사진 〉



시민저항(원형)	국가폭력(역삼각형)	제도(사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삼각형, 사각형은 사람이 그린 문양 중 가장 오래된 문양인 반구대 암각화에서 착안 -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점을 표현하도록 바닥동판 모듈로 진행 - 서울시 인권로고, 장소 명칭, 발생 연도, 장소를 설명하는 문안을 기재하여 해당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현황('22년 10월 기준) 〉

(단위: 개소)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 고
61	39	6	5	5	3	2	1	

카. 인권지킴이단 운영

- 동 사업은 인권침해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전년(1천4백만원) 대비 64.9% 감액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4,256	14,256	5,000	△9,256	△65
사무관리비	14,256	14,256	5,000	△9,25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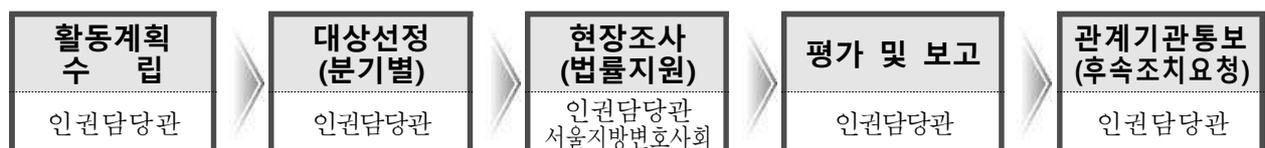
- 이는 인권지킴이단 실집행액을 고려한 감액(9백만원)으로 적정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에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이었으나 사업명도 “인권지킴이단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
-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 인권지킴이단 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침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를 한다고 하고 있으나,
- 사업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경우 현재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의 접수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도 별도로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오히려 지속적인 상담 창구 확대를 통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실제로 인권침해 현장 등에 찾아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3년 인권지킴이단 활동 계획 〉

사업개요

- 구성: 인권담당관,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 협약 체결('16.12.)
- 대상: 사업소,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침해 취약분야
- 역할: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인권 보호
- 사업주기: 분기별 1회, 연간 총 4회 예정

운영절차



※ 필요시 市 조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소요예산 : 5,000천 원**

○ 변호사 활동수당(150천원 X 8회 X 4회) : 4,800천원

- 대상별 8회, 연간 총 4회(분기별 1회)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 인권지킴이단 운영비(회의경비, 사무용품 구매 등) : 200천원

※ 감사위원회 별도제출자료, 2022.11.11. 참조.

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서울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감액)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9천6백만원)” 사업과 “서울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1억3천4백만원)” 사업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있음.

사업명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 감		증감내역 및 사유
			증감액	비율(%)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95,616	0	△95,616	△100	▶ 기간제근로자등보수(7,416→0) 7,416 감액 - 감사담당관으로 이전 ▶ 특정업무경비(13,200→0) 13,200 감액 - 인권위원회 운영으로 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75,000→0) 75,000 감액 - 행정국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통합
서울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134,320	0	△134,320	△100	▶ 사무관리비(4,320→0) 4,320 감액 ▶ 행사운영비(130,000→0) 130,000 감액 - 행사 개최주기 2~3년으로 조정

○ 먼저, “서울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사업은 행사 개최주기를 2~3년으로 조정함에 따른 감액으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행사 개최주기 평가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우크

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다음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민 인권증진 사업 수행 단체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행정국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음.

- 다만, 종전에는 인권담당관에서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인권관련 사업 지원을 통하여, 1년에 5개~10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인권단체 사업지원의 축소 가능성이 있는바, 행정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에서 인권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을 일정부분 보장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313면.

○ 비영리 인권단체 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편성액	편성내역	집행액	집행내역
2020 (보조금 사업)	200,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20,000*10개	200,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12개)
2021 (보조금 사업)	150,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15,000*10개	150,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10개)
2022 (보조금 사업)	75,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15,000*5개	75,000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5개)

○ 또한, 본 사업을 포함하여 인권담당관 소관 사업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는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인권보호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2022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사업 등의 집행률(2022.10.25.기준)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지나치게 저조(49.1%)하므로, 사업 미집행, 불성실 집행 등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감사위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 인권담당관 사업별 집행률 〉

(기준 : 2022.10.2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예상
인권담당관	994,622	488,107	506,515	49.1%	90,284
인 권 보 호 및 증 진 활 동 지 원	95,616	91,179	4,437	95.4%	918
서 울 특 별 시 인 권 위 원 회 운 영	55,010	18,100	36,910	32.9%	34,644
시 민 인 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운 영	39,880	33,660	6,220	84.4%	0
인 권 감 수 성 향 상 을 위 한 인 권 교 육	322,520	140,772	181,748	43.6%	10,375
인 권 정 책 흥 보 강 화	60,000	600	59,400	1.0%	10,600
서 울 시 민 인 권 실 태 조 사	155,600	82,397	73,203	53.0%	1,647
인 권 현 장 체 험 프 로 그 램 개 발 운 영	53,420	36,120	17,300	67.6%	4,200
서 울 인 권 콘 퍼 런 스 및 인 권 문 화 행 사 개 최	134,320	56,773	77,547	42.3%	3,094
철 거 인 권 지 킴 이 단 운 영	14,256	8,256	6,000	57.9%	4,756
인 권 영 향 평 가 제 도 운 영	64,000	20,250	43,750	41.6%	20,050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최 문 숙
---------	-------	-----------	-------